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규정

제 정 2021. 04. 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예술 향유, 창조력 함양,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성된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 기준 마련 및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성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운영하는 "센터"의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의 사용"이란 제5조의 시설의 사용,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행사, 공연, 창작활동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명칭 및 소재지) ① 센터의 명칭은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로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 명칭인 "성남꿈꾸는예술터"와 병행 사용하며, "성남꿈터"를 약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86(산성동)이다.

제5조(시설 또는 장비) 센터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두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2.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3. 시민의 문화적 삶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개발, 운영
4.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교육 원격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8.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9. 센터 건물 및 부대·임대시설 등의 관리운영, 센터 시설의 대관, 수익금 관리
10.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운영시간) 센터 운영시간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성남문화예술교육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제9조(교육운영 강좌개설) ① 센터는 시민의 문화예술교육 능력의 향상 및 창의적 예술 활동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강좌를 개설한다.

② 교육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문화예술강좌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변동시 시설 유지 및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대표이사가 정한다.

②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 특례)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센터가 외부 기관과 맺은 업무협력, 공동 주최 또는 후원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
3.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사

제12조(사용의 제한 등) 센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센터의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강연회·모임 등의 행사와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4.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기타 센터의 운영목적과 운영방향에 어긋나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제13조(세부 운영지침) 센터 운영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규정에 따라 별도의 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